

제 호

이륜자동차 운행정지명령서

소유자	① 성명(명칭)	
	② 주소	

③ 이륜자동차번호

④ 운행정지기간

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(일간)

위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[]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7조제2항 후단, 제52조 및
[]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7조제3항 전단
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합니다.

년 월 일
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주 :

- 이 명령서를 받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51조제1항에 따른 검사목적에 위한 임시운행 외에는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.
- 이 운행정지명령 대상인 이륜자동차를 임의운행하는 경우에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81조제22호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